

안양시장애편체육회 공고 제2024 - 8호

## 안양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

안양시 장애인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근무 할 유능하고 참신한 장애인체육 인재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7일

안양시장애편체육회장

###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채용분야	인원	담당업무
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(무기계약직)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상담 및 지도</li><li>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, 지도 및 관리</li><li>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/li><li>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활동조사, 지도 및 관리</li><li>기타 장애인체육 관련 현장지도 업무, 행정업무 등</li></ul>

### II 근로조건

급여기준	근무일	시간	장소
급여: 월 2,185,200원(급여, 법정보험료, 퇴직적립금 포함) 수당: 활동비, 명절휴가비(연2회), 연장근로수당, 근속수당 퇴직금 지급(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)	주5일 (월~금)	09:00 ~ 18:00	사무국 등 현장

구 분	주 요 내 용
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한 없음 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)</li> </ul>
자격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</li> <li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</li> </ul>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&gt;</b></p> <p>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</li> <li>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</li> </ul> </li> <li>5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6.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 &gt;</b></p> <p>제12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.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</li> <li>3.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) 재직 시 부패행위,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</li> <li>4.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

## IV 채용절차 및 일정

구 분	일 시	비고
모집공고 및 원서접수	24. 7. 17.(수)~7.31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접수처 : 안양시장재인체육회 사무국 (안양종합운동장 1층)</li> <li>· 접수방법 : 직접 제출</li> <li>※ 근무시간(09:00~18:00)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</li> </ul>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24. 8. 2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심사</li> <li>·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</li> </ul>
면접심사	24. 8. 13.(화) 10:00	· 지도자로서의 적성 · 인격 및 소양 평가
최종합격자 발표	24. 8. 16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득점자 합격</li> <li>· 신원조회</li> </ul>
채용예정일자	24. 8. 19.(월)	·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
## V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 목록	구 분	제출서류 목록
응시 (접수)자	1. 이력서(양식참고)	최종 합격자	1.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외의 자격증 사본
	2. 지원서(양식참고)		2.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
	3. 자기소개서(양식참고)		3. 건강진단서(의료기관 발행)
	4. 연간 지도계획서(양식참고)		4. 주민등록 초·등본
	5.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(취득 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)		5.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
	6. 가점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6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양식 내려 받아 작성(작성란 외 내용수정금지), 위 양식과 상이할 시 미제출로 간주</li> <li>· 제출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</li> </ul>		

## VI

## 가점대상

- 교육대학(원), 사범대학(대학의 (특수)교육과 • 체육교육과), 특수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-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
-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
- 국제대회 입상자 및 장애인 국가대표 출신
- 청년층(만 34세 이하)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 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성매매피해자, 위기청소년,更生보호대상자, 여성가장, 노숙인)

## VII

## 기타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(기준)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접수한 제출서류는 채용 종료일로부터 14일 내 채용담당자(031-388-3484)에게 요청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.(최종합격자 제외)
- 최종 합격 및 근로 계약 이후라도 채용포기,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, 채용비리, 허위지원 등 결격사유 발생(6개월 내)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, 6개월 이후 발생할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.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채용 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근로계약 체결 후 2회차까지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(☎031-388-348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